

서울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8나205886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8나205886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가합519392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갑

변론 종결 2019. 4. 18.

판결 선고 2019. 6. 2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가합519392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A과 피고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1.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1) (원고는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 외에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의 양도 및 그 통지를 구하는 것으로 원상회복에 관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4면 제11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

-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피고 B'를 'B'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별지 1 기재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피고 A'를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피고 B'를 'B'로 모두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의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남편 G는 G 명의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조미김 생산·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이하 피고와 G를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피고 측'이라 한다). 피고 측은 2009년경부터 2017. 10. 말경까지 'T'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한 제1심 공동피고 A와 거래관계를 유지해왔는데, 그 내용은 A은 조미김의 원료인 원초를 구매하여 피고 측에 납품하고 피고 측이 생산한 조미김을 판매처에 판매대행을 하고, 피고 측은 A에게 원초 구입대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피고 측은 위 거래관계에 따라 A과 매월 정산을 해오던 중 피고 측에서 A에게 지급한 원초 구입대금이 공급받은 원초의 가액보다 더 많아지게 되자 2017. 6. 중순경 A에게 거래관계 종단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A이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여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A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변제자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G로부터 액면금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자금지원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이는 A이 자신의 사업체인 I을 계속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A과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나 제30, 32, 33,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제1심 공동피고 A이 피고 측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여금 또는 원초 관련 대금 채무가 약 1,000,000,000원이었고, G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일인 2017. 6. 21. A에게 액면금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으며, A은 이를 할인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이후 2017. 10. 말경 피고 측과 A의 거래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이 피고 측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약 1,000,000,000원에 이르는데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90,000,000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G는 A에게 추가로 자금지원을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불과 4개월 후 피고 측과 A의 거래가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은 피고 측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기보다는 기존의 원초 관련 대금채무 등의 담보를 위하여 이를 마쳐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었으나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그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J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29,474,482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위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지급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범균

판사김대현

판사주선아

별지

1) 2019. 1.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면에는 '2017. 6. 21. 체결한 매매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6. 21.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오기로 봄이 타당하다.

2)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